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,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기관인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“KS A 17020해설서” 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22호, 2008. 6. 20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
기 술 표 준 원 장

KS Q 17020 해설서

구분	규격번호	규격명	규격내용
개정	KOLAS-G-010	KS Q 17020 해설서	별첨

[별첨] : 1. 개정전문(KOLAS-G-010)

2. 신규대조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